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직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정원 조정: 총계 변동 없음
 - 4·5급 정원 증원: 증 2명 (7명 → 9명)
 - 교육지원청 4·5급 정원 증원: 증 2명 (0명 → 2명)
 - 5급 이하 소계 정원 감원: 감 2명 (6,978명 → 6,97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2) 입법예고(2021. 7. 5. ~ 2021. 7. 26.) 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6)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1]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7) 비용추계: [별첨2]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627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059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9		28	11	
4·5급	9		7	2	
5급 이하 소계	6,976				
전문경력관 소계	8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565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1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7,627					총 계	7,627				
정무직 계	1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059					일반직 계	7,059				
2·3급	1		1			2·3급	1		1		
3급	9		9			3급	9		9		
3·4급	3		3			3·4급	3		3		
4급	39		28	11		4급	39		28	11	
4·5급	7		7			4·5급	<u>9</u>		7	<u>2</u>	
5급 이하 소계	6,978					5급 이하 소계	6,976				
전문경력관 소계	8					전문경력관 소계	8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565					특정직 계	565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15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15				

【별첨 1】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6급	성명	김산원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고태훈, 곽민재, 권정우, 김희진, 정진권, 송지은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과 관련하여 일반직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 것임 - 개정 내용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항 없음 의견임 					<p>원안동의 (권고사항 없음)</p>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4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일반직공무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개정안은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총수 변동 없이 2명의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임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김산원(02-399-9357)

【별첨 3】

관 련 규 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범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

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2018. 2. 27.>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5. 8., 2018. 2. 27.>

1. 본청의 과장·담당관(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2.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본조신설 2013. 5. 8.]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4.6.11., 2016.12.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3.12.4., 2018.2.27.>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